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052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10. 10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4.

주 문

-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/18 지분에 관하여 2020. 7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하상익

별지